의안번호	제543호
의 결	2013년 10월 17일
연월일	(제324회)

#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손문규 의원 외 6명
발의연월일	2013년 9월 16일

#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문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43

발의년월일 : 2013년 9월 16일 발의자 : 손문규, 장선배, 노광기

김양희, 박종성, 최미애

최병유 의원

####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내용을 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보조금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안 제2조 제1호)

3. 개정 **조례안** : 별첨

### 4. 참고자료

○ 관계법령 : 별첨

○ 예산 수반(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집행기관 협의 여부 : 여

○ 입법예고 여부 : 해당 없음

##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조금"이라 함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 및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과 시·군에 교부하는 자금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제2조(정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충청북도(이하	1
"도"라 한다)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 및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u>자금</u> 과 시·군에 교부하는 자금 및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운영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u> 포함한다</u> ) ·····
자금을 말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지방재정법

-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 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중단 또는 완료 시 남은 재산 처리,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 (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